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총회 산하 지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며 각 노회와 지교회를 통찰하며 모든 국내 교회 및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한국과 세계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교, 봉사, 교육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산하 지교회와 노회를 지도하고 치리하며, 국내외 교회 간에 친교와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 납부 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

동한다. 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단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와 남신도회·여신도회·청년회 대표 각 2인을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초청 언권회원

총회는 초청 언권회원 35인 내외를 총회 실행위원회 추천으로 초청하며 본회와 안전심의부에서 언권을 가진다.

3. 당연직 언권회원

- 1) 증경총회장, 증경부총회장
- 2) 전직 총무
- 3) 총회 총무
- 4) 총대 아닌 위원장 - 해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케 한다.
- 5) 공천위원회 위원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 회 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 기 1인, 부 서 기 1인

회 계 1인, 부 회 계 1인

제7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장

- 1)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회의를 사회하고 통괄한다.

- 2) 총회의 모든 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총회장은 임기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 직책상 위원 및 대외 관계 위원직을 제외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다.

2. 부총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1) 총회의 개회 및 진행의 절차를 준비한다.
- 2) 총대의 천서를 접수하여 총회원의 명부를 작성 배포한다.
- 3) 접수된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여 헌의위원에게 인도한다.
- 4) 전화에서 유안된 사건을 총회에 제출한다.

4. 부 서 기

서기를 도와 회의 진행에 따라 각 항 내용을 정리한다.

5. 회 계

총회 재정 회계 사무 규정에 따라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6. 부 회 계

회계를 협조하고 회계가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장은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중에서 등록한 자를 후보자로 하고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 1) 후보 등록자가 경선일 경우에는 결선투표로 선임한다.
 - 2) 단독 후보 등록자일 경우나 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유고될 시에는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 중에서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은 후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실격되고, 총회에서 구두 호전을 받은 사람 중 3인을 임직순으로 정하여 투표한다.
3.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4. 기타 임원은 총회장, 선임된 총회장, 부총회장(2인)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5.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다.
6. 임원은 안전심의부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7. 총회장, 부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유지재단이사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안전심의부장 및 상임위원회의 장을 하지 못한다.
8.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차 9월 중에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 공고와 절차, 총대 명단 및 회의서류는 개회 10일 전에 총회원에게 발송한다.
3. 총회 각 부서 및 위원회는 총회 전에 모여 필요한 보고 안건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4. 총회 각 부서, 위원회 및 노회가 제출하는 청원, 현의, 문의 등 모든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안전별로 2통씩 총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폐회 기간 중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안전심의부원 및 정기위원

제11조 (안전심의부)

1. 구성

총회 본회의 안전심의부를 총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부원 수는 회원 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1) 정치부 100인 내외 2) 법제부 100인 내외 3) 선교부 100인 내외
- 4) 국제협력선교부 100인 내외 5) 교육부 100인 내외
- 6) 사회부 100인 내외 7) 신도부 100인 내외 8) 재정부 100인 내외

2. 임무

각 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정치부 : 모든 법규에 따르는 모든 행정 사건에 관한 현의를 심의하여 보고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을 본회에 제의한다.
- 2) 법제부 : 법규에 대해 해석하는 일과 총회의 규칙 및 총회 안의 각 부서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3) 선교부 : 교회 안의 모든 선교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4) 국제협력선교부 : 국제협력선교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5) 교육부 : 교회의 모든 교육에 관련된 현의안과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와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6) 사회부 : 교회 안의 복지와 구호 및 사회의 제 문제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7) 신도부 : 남·여신도회와 청년회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8) 재정부 : 총회 안의 모든 예산 및 재정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배정과 임기

안전심의부의 각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배정되며 임기는 총회 기간 중에 한한다.

- 1) 부원은 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2) 정치부원은 목사를 과반수로 하고 재정부원은 장로를 과반수로 한다.
- 3) 각 부의 첫 모임은 그 첫머리의 기명자가 소집한다.
- 4) 총회장, 부총회장이 소속된 노회 총회원은 안전심의부 부장에 선임될 수 없고, 부장으로 선임된 자는 3년간 모든 부서의 부장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또한 동일 안전심의부 부장에 같은 노회의 총회원이 2년 연속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2조 (정기위원)

1. 위원

- 1) 현의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총무
- 2) 천서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부서기
- 3) 절차위원 3인 - 총회 서기와 총무, 총회 집회장소 노회장
- 4) 지시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5) 질서유지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6) 통계위원 2인 - 총회 전 서기와 총무
- 7) 총회주제위원 6인 -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서기, 총무, 한신대학교 총장,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전문인 2인(여성 1인 이상)

2. 임무

- 1) 현의위원
 - (1) 총회가 개회하기 1개월 전에 각 노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또 직접 안전을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 (2) 현의위원 보고는 총회 개회 후 먼저 하며, 언제나 우선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 (3) 안전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개시일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2) 천서위원

총회의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되 분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현의위원에 회부하여 검사케 한 후 총회에 보고케 한다.

3) 절차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여 총회 개회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시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상의 광고 및 모든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5) 질서유지위원

(1) 총회에 불참한 회원과 조퇴한 회원의 사유를 청취, 조사하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모든 여건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질서유지위원의 허락 없이 귀기한 회원에 대하여 여비 지출에 따르는 조치를 한다.

6) 통계위원

총회 산하 전국 각 지 교회의 교세 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 각 노회로부터 수집,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총회 주제위원

총회 주제위원은 매해 총회 주제를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13조 (상임위원회)

총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추천위원이 있는 부서 및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1. 헌법위원회

1) 위원은 29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고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1.에 의하여 조직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과 제 규칙,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
-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2. 고시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되, 그 중 위원회 추천 전문위원은 1인으로 하며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목사고시 업무를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3. 총회유지재단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한다.
- 3)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 보존을 위해 협력한다.
- 4) 선교기금 및 장학기금을 관리하며 그 관리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4. 재판국

- 1) 국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고,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그 국장에는 목사로 선임한다. 단,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 한하며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 2) 총회에서 위탁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5. 교육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위원 1인 포함)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교육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 3) 총회의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선교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제반 선교방향을 개발하고 선교적 과제를 창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1) 위원은 17인(여성 1인, 각 신도회 1인 포함)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국제협력선교에 대한 정책 입안과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8. 교회와사회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한 사회선교사를 임명·파송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9. 평화통일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통일의 성취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 기후정의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창조세계의 회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교단 내외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1. 양성평등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2. 총회연금재단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연금사업과 가입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3. 신도위원회

- 1)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총회 공천 6인(목사 3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총회
신도부장, 각 신도회 대표 2인으로 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각 신도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 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
를 목적으로 한다.

14. 재정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총회 공천 12인, 총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5. 생활보장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 여성 위원 1인으로 하며 별정 규
정을 둔다.
- 2) 총회 산하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보장제 사업
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6. 선거관리위원회

-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해 총회 목사 회원 6인, 장로 회원 5인을 구성(여성 1
인 이상)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서 하나님의 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룩한다.

17. 공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가 선임한 1인과, 여성 위원 1인으로 구성하되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에서 맡긴 공천 사무를 전담한다.

18. 역사위원회

- 1) 위원은 12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 기록물을 지정, 관리 보존한다.
- 3) 총회 역사자료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19. 노회특검사위원회

- 1)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별정규정을 둔다.
- 2)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0.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회

- 1) 이사와 감사는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단,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이사는 이사 18인(총회 총무 1인,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이사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총장은 이사를 할 수 없다(단, 재임 기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법인이사회가 정한 일정금액을 재정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 3) 감사는 2인으로 하며 개방 감사를 제외한 1인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가 선임한다.
- 4)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5) 한신대학교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6)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육과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한신대학교를 운영한다.
- 7)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1.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 1)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인(이사장, 총장, 신대원장),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총회추천 10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추천 10인은 4년조와 2년조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3)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소정의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2.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기독교농촌개발원을 운영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3.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 1) 위원은 9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2) 총회 영성수련원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4. 목회와신학연구소이사회

- 1) 본 연구소 이사는 33인(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되 총회 공천 29인, 당연직(한신대 총장, 소장), 이사회 추천이사 2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5.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사회

- 1) 본 이사회 이사는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당연직 1인(총회총무),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총회 추천이사 5인, 외부 추천이사 3인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2인(외부추천 1인, 1인은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6. 감사

- 1) 3인을 3년조로 하되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 2) 장로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총회의 재정 및 업무는 2월과 7월에, 자체 감사가 있는 산하단체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4) 각 상임위원회 감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받아야 한다.
- 5) 실행위원회 언권위원이 된다.

27.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본 부

제14조 (본부의 직무)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15조 (본부 직원)

총무 1인, 부총무 1인, 국장 약간인, 부장 약간인, 간사 약간인, 사무원 약간인, 협동직원 약간인

제16조 (본부의 직제)

본부에는 총무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 1) 교육국 : 교단 교육, 교재 연구 개발 등
- 2) 선교사업국 : 선교사업, 정의평화봉사사업, 에큐메니칼 협력사업, 본부의 제반 행정, 서무, 홍보, 출판 등
- 3) 행정사무국 : 총회 제반 재정 및 산하 재단, 법인의 업무 등

제17조 (직원의 임무)

1. 총무

- 1) 총회의 업무책임자로서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 2) 총회의 모든 문서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 3) 총회본부 직원의 보직을 명하고 통솔한다.
- 4)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조정한다.
- 5) 총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2.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국장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부서와 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4. 부장, 간사

총무와 해당 국장의 지시하에 해당 부서의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5. 사무원

소속 부서의 일반 업무를 수행한다.

6. 협동직원

소관 업무를 협조 수행한다.

제18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무

총대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어도 가하며, 총무는 부총회장 선거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하고 총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부총무

총무가 제정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3. 국장

총무가 제정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4. 부장, 간사

총무의 제정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5. 사무원

총무가 임명한다.

6. 회계 사무의 직책을 맡은 직원은 재정보증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7. 총회 산하 유급 실무직원은 총회 총대와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재단 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처무 규정)

본부의 처무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연합회

제20조 (연합회)

총회는 남·여신도회, 청년회,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산하에 두며 지도, 보조, 감사한다.

제9장 재 정

제21조 (총회의 재정)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와 소속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하는 재산과 그밖에 총회가 조성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상회비는 노회의 재정 실적에 준하여 배정하되

세례교인 부담금으로 한다.

제22조 (상회비의 납입)

상회비는 노회가 4분기로 납입하되 1월초, 5월초, 8월초, 총회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월에서 6월까지를 상반기로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를 하반기로 하여 총회에 전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상반기 수지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제24조 (여비 규정)

총회의 여비 규정은 총회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장 회원권 제한

제25조 (회원권 제한)

1. 생활보장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총회 혹은 노회의 서류 발급을 제한한다.
2. 총회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단, 연금가입 자격이 상실된 자는 예외로 한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총회가 공정한 법인 이사(위원)는 총회나 총회 실행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단의 이익과 임명권을 훼손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고 모든 공천에서 배제한다.

4. 각 상임위원회와 기관은 회원권 제한을 특정한 총회의 결의와 지시에 대한 안전을 다룰 때 반드시 기명식 투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장 개정 절차

제26조 (개정)

이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975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
1976년 9월 제61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
2024년 9월 제109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